

부산장안지구 중흥S-클래스

특별공급(다자녀가구) 사전당첨자 구비서류 안내

■ 특별공급(다자녀가구) 사전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- ※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(2021. 11. 30)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 접수 가능함. (※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,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- ※ 사전당첨자께서는 정당계약 체결 이전 아래 서류제출 일정에 맞추어 방문 예약 후 접수장소에 방문하시어 아래에 자격 검증 서류 및 부적격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전 서류접수 예약된 일시에 사전당첨자 본인 외 동반1인까지(대리인 접수 가능) 출입이 가능하며, 임신부, 노약자 및 만성질환 환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고 대리인을 통하여 서류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

구분	사전 서류접수 기간	접수장소
사전당첨자 서류 접수	2021. 12. 23.(목) ~ 2022. 01. 03.(월) 12일간, 10:00 ~ 16:00	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391-3 (중흥S클래스 건본주택) ※ 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

■ 특별공급(다자녀가구) 사전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(계약체결 전 제출)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	
필수	무주택서약서	본인	• 접수장소 비치	
	신분증	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	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	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"전체포함" 하여 발급	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	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주소변동 사항 · 사유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 하여 발급	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출입국사실증명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	
추가 필요시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사전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	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	• 배우자 분리세대 시 ·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"전체포함" 하여 발급	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	• 사전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안되는 경우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주소변동사항 · 사유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 하여 발급	
	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자녀	• 재혼 · 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"상세"로 발급 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"전체포함" 하여 발급
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 :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	• 임신한 태이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•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증명서(임신진단서 외 불가)
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• 임신한 태이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· 접수장소 비치
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저촉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소형 · 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(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)	인감증명서	본인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	
	인감도장		•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	
	위임장		• 사전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· 접수장소 비치	
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사본 1통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)	

- ※ 사전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사전예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사전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사전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사업주체에서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.
- ※ 주민등록표등 · 초본 발급시 사전공급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,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 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 / 변동일 / 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
 -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